たほの別のはよ

문서번호	사회복지	과 .	25209
보존기간	5	년	
결재일자	2017.	7.	12.
공개여부	70	7	H

담당자	담	당	과	장	부	고	수	코	수	
石叫人	, 2° 29	1 ~	21-	母か	24	nz	R	2,13	45/	결
협조			-							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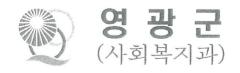
영광군 특별구호비 지급 기준(안)

[요 지]

- 이 (배 경) 법적 근거 미약 및 집행기준 부재로 구호업무 혼선
- (목 적) 효율적 구호업무 추진 및 현장대응력 강화
- (기본원칙) 공공성을 감안하여 선심·시혜성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운영 하되 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 <u>피해정도에 따른 적정금액 반영</u>
- (지급대상) '재해구호법'상 이재민이 아닌 자 중 재난·화재 등으로부터 인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
- (지급기준)

-1 -1 -7 3-2	2 -2	
피해구분	피해규모	지 급 액
	전파(전소)	500,000원
주 택	붕괴(반파), 유실·전도, 반소	300,000원
	일부손실	200,000원
이 적	입원(1주일 이상)	300,000원
	사 망	500,000원

· (이후계획) 연도내 특별구호비 법적기준 마련



영광군 특별구호비 지급 기준(안)

'영광군 특별구호비'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여 효율적 구호업무 추진 및 현장 대응력 강화

□ 추진배경

- 그 동안 화재 등 갑작스런 피해가 발생한 주민에 대하여 **온정적** 차원에서 특별구호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대상·피해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구호행정의 혼선 발생
- 특히,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**불필요한 문제 발생 소지와 피해정도가** 고려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 꾸준히 제기
- 이에, "특별구호비"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구호 업무 추진과 현장 대응력 강화

□ 연도별 지급현황

(단위 : 천원)

2014년도				2016년도					
예산액	집행액 (세대)	집행율	예산액	집행액 (세대)	집행율	예산액	집행액 (세대)	집행율	비고
8,000	400 (2)	5%	8,000	600 (3)	7.5%	8,000	2,600 (13)	32.5%	

※ 특별구호비에 대한 지급 기준이 없어 업무 역량 저해 및 예산 집행률 미비

□ 지급기준

- (기본원칙) 공공성을 감안하여 선심·시혜성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운영 하되 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 <u>피해정도에 따른 적정금액</u> 반영
 - * 현재는 피해정도 등에 구분없이 정액지급(200천원)

- (지급대상) "재해구호법" 상 이재민¹⁾이 아닌자 중 아래의 피해를 당한 사람
 - * 이재민의 경우 "재해구호법"에 따라 지원
- 재난으로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자 *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이란 **의료기관 입원 1주일 이상으로 봄**
-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·붕괴 또는 전도(顚倒) 등으로 상실하였 거나,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·파손된 사람
- 주택 붕괴, 침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자
-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이 발생한 자 및 부상 또는 사망한 자

【 일시대피자 세부 기준 】

- ◆ 재해가 예상(발생)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일시대피한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
- (지급시기) 재해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

○ (지급기준)

- 주택피해 :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· 소실·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
- 인적피해 : 재난으로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

○ (지급금액)

구 분	피해규모	지 급 액		
	전파(전소)	500,000원		
주택피해	붕괴(반파), 유실·전도, 반소	300,000원		
	일부파손(손실)	200,000원		
인적피해	입원(1주일 이상)	300,000원		
	사 망	500,000원		
동시피해(주택, 인적)	_	500,000원		
일시대피자	_	200,000원		

※ 여러 피해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지급액이 큰 피해로 지급

^{1) &}quot;이재민"이란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(이하 "재해"라 한다)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

- o (지급방법) 세대주 또는 가구원 계좌입금 워칙
 - 단 침수, 화재 등으로 통장을 유실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현금지원(현금수령증 교부)
- (지급절차) 읍·면 요청 → 현장확인 → 지급

요 청(읍・면)		현장확인(군)		지 급(군)
특별구호 요청	\Rightarrow	현장방문 후 지원여부 결정	\Rightarrow	본인계좌 지급

○ (시 행일) 통지일 이후부터

□ 이후계획

- 연도 내 "특별구호비"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
- * 道내 지자체중 11개 시·군(순천, 여수, 광양, 나주, 담양, 구례, 보성, 장흥, 무안, 해남, 장성) 특별구호가 포함 된 '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관련 조례 제정'
- 지급기준 마련으로 **적극적 구호 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율 제고**

□ 행정사항

- 읍·면에서는 **피해가구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확인** 후 별첨 서식 (구호요청서)을 첨부하여 **전자문서로 특별구호 요청**
 - ※ 긴급히 조치해야 할 피해 발생 시 유선 또는 팩스 요청

특별 구호 요청서

	세대주 성 명			생년월	일		
구호대상 인적사항	주 소			가구원:	수		
	연락처						
	□ 주택피:	해(□ 전피	├ □ 반파	□ 일부피	· 수)	7127	
□ 인적피해(□ 부상(1주일이상입원) □ 사망)							
요청내용	□ 동시피	ठे भे					
	□ 일시대:	피(□ 재닌	화재))			
	※ 해당되는	구호에 체	∃(∨)				
지급계좌	예금주		계좌번호		금융기된	<u> </u>	
<피해 개요>							
0							
0							
위와 같이 특별	별구호를 요	청합니다	•				
		2017년	월 일				
	추 천 인	: 0 0) 읍 면	장 (직인)			
영광군수귀하							

(참고)

재해구호법상 이재민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- (재해구호물자)
 - 구호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재해구호물자를 이재민(일시대피자) 에게 지원
 - 임시주거시설에 취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취사구호세트 및 부식류 제공
- **(임시주거시설)** 임시주거시설 제공(학교 등)
- (조립주택)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12개월 지원(주택 유실·전파 시)
- (의 연 금) 사망・실종 1,000만원, 부상 500만원, 주택전파 500만원,
 반파 250만원, 침수 100만원, 주 생계수단에 재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
- (의료급여)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라 구호기간동안 이재민을 의료 급여 1종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의료급여 실시
- (장 사)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(유족)이 없을 경우 지자체장이 장례